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56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 김문수 • 주철현 • 박지원

정일영 • 박해철 • 김남근

최민희 • 이용우 • 강준혁

문정복 • 서영교 • 김준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 10만명 이상이동의하면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지명이나 추천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위원장의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어 있어실제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지명 또

는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3명으로 축소하고 학생·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함.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95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전단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또는 청년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부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	3
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u>.</u>
1. 국회가 추천하는 <u>9명</u> (상임위	1 <u>7명</u>
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다.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5명</u> (상임	2 <u>3</u> 명
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
	생 또는 청년 관련 단체가 추
	<u>천하는 2명</u>
<u><신 설></u>	5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
	부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
	<u>명</u>

- 6. ~ 7. (생략)
- ④ (생략)
- ⑤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 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 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 다.
-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 설>
- (7)·(8) (생 략)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 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 조정할 수 있다.
 - 1. (생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2.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 는 경우
 - 3. (생략)
 - ② ~ ⑥ (생 략)

- 6. ~ 7.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u>이 경우 위</u>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
	쳐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	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견 수렴·조정 등) ①
	<u>.</u>
	1. (현행과 같음)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